# 규정관리규정

제정 2002. 1. 22 개정 2003. 2. 18 개정 2010. 12. 29 개정 2011. 12. 26 개정 2014. 5. 28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이하 "기정원"이라 한다)의 제 규정의 제정, 개폐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제 규정의 제정, 개폐 및 시행에 관하여 기정원 정관과 타 규정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"규정"이라 함은 기정원의 조직, 직원의 권리·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용 에 관한 기본방침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.
- 2. "요령"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- 3. "규정주관부서"라 함은 직제규정에 의한 분장업무의 규정관리 담당 부서 를 말한다. (개정 2003. 2. 18)
- 4. "규정소관부서"라 함은 직제규정에 의한 분장업무의 담당부서를 말한다. (개정 2003. 2. 18)

제4조(제정권자) ① 제규정의 제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이 사 회 :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2. 원 장 : 요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-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결과를 중소기업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침) ① 법령, 고시, 공고, 규정, 요령 등(이하 "법령 등"이라 한다)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 등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기정원 운영과 관련한 내부적 사항 및이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.
  - ② 지침안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고 원장의 결재로서 확정되며, 확정된 지침은 규정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제6조(규정화) 기정원의 조직체계와 업무운영에 준거할 제반사항과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능한 규정화 하여야 한다.
- 제7조(효력) ① 규정의 효력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하며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  - ② 규정은 요령에 우선하고, 동 순위의 규정중 상호 저촉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제정된 규정이 우선한다.(개정 2003. 2. 18)
  - ③ 제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는 소급적용할 수 있다.
- 제8조(규정의 해석) 규정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1차로 소관부서의 해석에 의한다. 다만, 소관부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타 부서와 관계있는 규정에 관하여 부서간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규정주관부서의 해석에 의한다.
- 제9조(주지의무) 제규정의 제정, 개폐의 내용은 각 부서의 장이 지체없이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
#### 제2장 규정의 형식

제10조(규정의 형식) 규정은 규정명,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한다.

- 제11조(본칙) ① 본칙은 "조"로 구분한다.
  - ② 조문이 많을 경우에 본칙은 "장"으로 분류하고 다시 소분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"절", "관"의 순으로 세분하며, 조문의 수가 방대한 경우에는 "장"위에 편을 둘 수 있다.
  - ③ 편ㆍ장ㆍ절ㆍ관에는 일련번호와 제목을 붙인다. 다만 장ㆍ절ㆍ관의 일련 번호는 편ㆍ장ㆍ절이 바뀔때마다 새로 시작한다.
- 제12조(부칙) 부칙에는 본칙과 별도의 조·항 등을 사용한다.
- 제13조(조문의 배열) 조문은 다음 각호의 항목순으로 배열한다.
  - 1. 총칙적인 조문은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, 규정전체에 적용되는 원칙 또는 기본적 사항의 순서로 배열한다.
  - 2. 본체가 되는 조문은 사무절차, 중요도, 적용빈도 등의 순서에 적합하도록 배열한다.
  - 3. 부수적인 조문은 보칙, 벌칙, 특례 등의 순서로 배열한다.
- 제14조(조) ① "조"에는 편, 장, 절, 관의 배열에 관계없이 아라비아숫자로 시 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인다.
  - ② "조"에는 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조명을 조의 번호 다음에 괄호하여 기입한다.
- 제15조(항) 하나의 조를 내용에 따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"항"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"①, ②, ③ ···"의 일련번호를 붙인다.
- 제16조(호) ① 조 또는 항에서 일정한 사실, 사물 등을 열기할 경우에는 "호" 를 사용한다.
  - ② "호"에는 "1. 2. 3. ···"의 일련번호를 붙이며, 이를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"가, 나, 다 ···, (1), (2), (3) ···, (가), (나), (다) ···"의

순으로 일련번호를 붙인다.

- 제17조(조, 항, 호의 추가 또는 삭제) ① 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운 조, 항, 호를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그 이하의 조, 항, 호를 하나씩 끌어 올리거나 내린다. 다만, 조번의 변경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"제 ○조의 2" 혹은 "(삭제)" 등으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.(개정 2014. 5. 28)
  - ② 규정의 개정으로 편·장·절·관을 추가, 삭제 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.
- 제18조(개정일자 등 표시)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조, 항, 호의 끝에 개정일자와 "신설", "개정", "삭제"라는 문언을 괄호안에 표기할 수 있다.
- 제19조(주와 예시) 규정중에서 특히 주석 또는 예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는 "주" 또는 "예시"를 둘 수 있다.
- 제20조(표, 서식, 도면) "표", "서식", "도면" 등은 부칙 다음에 두며, 그 배열은 표, 서식, 도면의 순으로 한다. 다만, 간단한 "표"인 경우에는 본칙의 조문중에 표시할 수 있다.

### 제3장 규정의 제정 · 개폐

- 제21조(규정의 입안) ① 규정 및 요령, 지침의 제정 또는 개폐는 직제규정에 의한 분장업무의 담당부서(이하 "소관부서"라 한다)의 장이 작성한다. 이때 규정사항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(개정 2003. 2. 18)
  - ② 제1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규정주관부서가 조정한다.
- 제22조(원안의 심사)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규정의 제정·개폐안은 규정 주관부서에 제출한다.
  - ② 규정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- 1. 법령 등 타 규정과의 저촉여부
- 2. 규정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
- 3. 기정원 경영방침과의 부합여부
- 4. 제22조의 2에 따른 부패영향평가(단, 감사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일상감 사로 갈음할 수 있음)(신설 2010.12.29)(개정 2014. 5. 28)
- 5. 기타 정정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
- ③ 규정주관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자구의 수정, 체제의 정리등 경미한 사항은 협의없이 할 수 있다.
- 제22조의 2(부패영향평가의 실시) ①감사담당부서는 규정 제·개정 시안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직운영, 업무분장, 문서관리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(개정 2014. 5. 28)
  - ② 규정소관부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규정 제·개정안을 규정주관부서에 제출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 5. 28)
  - ③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  - ④ 감사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패영항평가를 실시하여 개선·정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(개정 2014. 5. 28)

(본조 신설 2010.12.29)

- 제23조(규정의 정비업무 및 통제) ① 규정소관부서는 소관규정을 검토하여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규정소관부서는 소관규정의 최신내용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규정주관부서는 규정관리대장에 의거 규정을 관리하여야 하며, 제규정의 통합·조정 및 통제 등 효율적인 규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규정의 제정·개폐 및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.

- 제24조(규정등록) ① 규정의 제정·개폐안이 확정되었을 때는 소관부서는 규정주관부서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규정주관부서는 제1항의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원안을 확인한 후 등록번 호를 부여한다.
- **제25조(원안의 보관)** 규정의 제정·개폐 원안은 규정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. (개정 2014. 5. 28)

#### 제4장 규정의 관리

- 제26조(편집 및 간행) 규정주관부서의 장은 제정된 제규정을 편집하여 규정집을 발간 배부하고, 제정, 개정되는 규정은 전자게시판에 공시하여 추록 발간 배부를 갈음할 수 있다.(개정 2014. 5. 28)
- 제27조(배부) 규정주관부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규정집을 배부하며 규정 집 배부대장을 비치하여 그 수급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### 제28조(규정 공개관리) (명칭 개정 2011. 12. 26)

- ① 규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업무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 관리 한다.(개정 2011. 12. 26)
- ② 공개방법은 기정원 홈페이지에 전자문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구체적인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(신설 2011. 12. 26)
- 제28조의 2(비공개대상 규정) 규정 중 규정공개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심의·의결한 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(신설 2011. 12. 26)
  - 1.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정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규정(신설 2011. 12. 26)
  - 2. 감독·검사·심사·평가 관련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하는 규정(신설 2011. 12. 26)
  - 3.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정원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

고 인정되는 규정(신설 2011. 12. 26)

제28조의 3(규정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) 원장은 규정 공개 관련 공개대상 여부, 공 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개관련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.(신설 2011. 12. 26)

### 제28조의 4(규정공개심의회) (신설 2011. 12. 26)

- ① 제28조의 2 규정에 의한 규정 비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공개심의회 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(신설 2011. 12. 26)
-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신설 2011. 12. 26)
- ③ 심의회 위원장은 규정관리 담당부서가 속한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임·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한다.(신설 2011. 12. 26)(개정 2014. 5. 28)
- ④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(신설 2011. 12. 26)

제29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니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 칙(2002. 1. 2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03. 2. 18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12. 2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12. 2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5.28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